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·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(4급 4명)을 증원하되, 증원되는 인력 중 2명(4급 2명)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,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1명(4급 1명)에서 2명(4급 1명, 5급 1명)으로 조정하는 한편,

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00000호, 2024. 00. 00. 공포·시행)된 것에 맞추어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2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1. 17. ~ 1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전단 중 “36명”을 “38명”으로, “4급 2명”을 “4급 4명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8항 중 “1명(4급 1명)”을 “2명(4급 1명, 5급 1명)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2024년 2월 14일”을 “2026년 2월 14일”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89”를 “29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86”을 “290”으로 하며,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1”을 “15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289”를 “29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86”을 “290”으로 하며,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11”을 “15”로 한다.

별표 3 중 “2024년 2월 14일”을 “2026년 2월 14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<u>36명</u> (4급 2명, 4급 또는 5급 13명, 5급 21명)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.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	제20조(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38명</u> -- <u>4급 4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1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⑦ (생략) ⑧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<u>1명</u> (4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⑨ (생략)	제21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<u>2명</u> (4급 1명, 5급 1명)----- -----.
제23조(미세먼지개선기획단) ①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	제23조(미세먼지개선기획단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<u>2024년 2월 14일</u>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~ ⑥ (생략)	----- ----- -- <u>2026년 2월 14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89</u>	<u>293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86</u>	<u>290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서 기 관 • 과 학 기 술 서 기 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11</u>	<u>15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1의2]

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89</u>	<u>293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86</u>	<u>290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서 기 관 · 과 학 기 술 서 기 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11</u>	<u>15</u>	+4
•	•	•	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8